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 2. 7 선고 2017가단2136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전 문

원고A

피고B

변론 종결 2018. 1. 17.

판결 선고 2018. 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2 기재 대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같은 목록 제2

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모두 피고 소유였다가, 이후 2013. 11. 1. 원고가 공매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¹⁾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문경시법원 2015가소192호로 피고를 상대로 치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5. 7. 23. "피고가 원고에게 2017. 7. 31. 또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는 위 조정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2만 원의 치료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단 한 번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한다.

3. 판단

피고가 위 조정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2만 원의 치료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단 한 번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는 답변서에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치료를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치료 미지급에 대해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다. 설령 피고가 자백하지 않았다고 해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치료 미지급은 피고의 책임으로 보이므로,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한편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치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지상권자가 판결확정 후 치료의 청구를 받고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치료의 판결확정의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287조에 의하여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법정지상권은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로써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전우석

별지

1) 등기부상 이 사건 건물은 문경시 C에 위치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문경시 D"로 표시되어야 할 것을 잘못 등재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건물의 표시는 등기부대로 표시하기로 한다.